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2869호 2022. 11. 4.(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5144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1
- 전라북도 조례 제5145호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16

**규 칙**

- 전라북도의회 규칙 제176호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 23

**훈 령**

-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75호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 ..... 24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1호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2호 금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30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3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고시 ..... 31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4호 익산 부송4지구 공공분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34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5호 광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안) ..... 35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69호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39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1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47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25호 전북애향운동본부(비영리민간단체) 소재지 변경등록 공고 ..... 48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35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공고 ..... 49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42호 전라북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 50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50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 51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5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52

##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10. 27.(목)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 72

##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2-175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75
- 군산시 고시 제2022-1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77
- 군산시 고시 제2022-182호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대로2-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87
- 군산시 고시 제2022-18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쌍용예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89
- 군산시 공고 제2022-2247호 도시계획시설(중로1-19호의2)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 91
- 익산시 고시 제2022-17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94
- 남원시 고시 제2022-14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 98
- 김제시 공고 제2022-7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100
- 완주군 고시 제2022-88호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02
- 임실군 고시 제2022-89호 군계획시설(임실 중로3-10)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 ..... 103

**발행 전라북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2년 11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144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119시  
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2조(「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5호 중 “심의회에 부의하는”을 각각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5조(「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6조(「전라북도 경관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7조(「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경  
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협의회에 부의하는”을 “협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조(「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전라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전라북도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한다.

제13조(「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폐구거”를 “폐도랑”으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타 허위서류의”를 “그 밖의 거짓서류”로 한다.

제14조(「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감안한다”를 “고려한다”로 한다.

제15조(「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 제17조(「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제1호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 제18조(「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 제19조(「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한다.
- 제20조(「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 제21조(「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 제22조(「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 제23조(「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 제24조(「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25조(「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26조(「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27조(「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허위문구”를 “거짓문구”로 한다.
- 제28조(「전라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29조(「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30조(「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 제20조제1항 단서 중 “허위광고”를 “거짓광고”로 한다.
- 제31조(「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3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 제32조(「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33조(「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 제34조(「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35조(「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 제10조제4호 및 제22조제4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15조제3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 제36조(「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37조(「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4항 중 “위원회에 부의하여”를 각각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로 한다.

제38조(「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39조(「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0조(「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41조(「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회한다”를 “참관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회자”를 각각 “참관자”로 한다.

제42조(「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3조(「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허위라는”을 “거짓이라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44조(「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45조(「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46조(「전라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47조(「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의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으로 한다.

제11조 중 “부의안전의”를 “안전”으로 한다.

제48조(「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의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으로 한다.

제49조(「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산업 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0조(「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삼락 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51조(「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2조(「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제53조(「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54조(「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55조(「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제56조(「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전단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57조(「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부의한”을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58조(「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59조(「전라북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60조(「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허위내용”을 “거짓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문서”를 “거짓문서”로 한다.

제61조(「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2조(「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의 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

제63조(「전라북도 여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제64조(「전라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부위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5조(「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부위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66조(「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67조(「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후단 중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위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68조(「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69조(「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을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으로 한다.

제70조(「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71조(「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72조(「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배수가 용이하며”를 “물 빠짐이 쉬우며”로 한다.

제73조(「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4조(「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5조(「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76조(「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7조(「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8조(「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9조(「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80조(「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를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1조(「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2조(「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83조(「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및 제19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으로 한다.

제84조(「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5조(「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위원회에 부의된”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86조(「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7조(「전라북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8조(「전라북도 정보화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6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 제89조(「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 제90조(「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 제7조제3항 본문 중 “부의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 제91조(「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92조(「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 제93조(「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 및 제11조 중 “쌍방”을 각각 “양쪽”으로 한다.
- 제94조(「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중 “허위에 의하여”를 “거짓으로”로 한다.
- 제95조(「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 제8조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 제96조(「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감안”을 “고려하여”로 한다.
- 제8조 중 “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 제97조(「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8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8조(「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허위나”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99조(「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한다.

제100조(「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01조(「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2조(「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협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한다.

제103조(「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104조(「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5조(「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106조(「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7조(「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08조(「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9조(「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을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으로 한다.

제110조(「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1조(「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2조(「전라북도 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3조(「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14조(「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로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을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5조(「전라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 제116조(「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후단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 제117조(「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118조(「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 제119조(「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120조(「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통할하고”를 각각 “총괄하고”로 한다.
- 제121조(「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122조(「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 제123조(「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 제124조(「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 제125조(「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 제126조(「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2년 11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145호

##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북도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지역의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전라북도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생산한 물품
8. 전라북도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전라북도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전라북도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지역사랑 상품권, 시설 이용권 등 전라북도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쇼핑몰 상품권
1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도지사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

무수행 능력

- 3. 전라북도 내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전라북도(도내 시·군을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전라북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선정 결과를 전라북도 누리집에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 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포상) 도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 및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전라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2022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 규칙 제176호

###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의회””를 ““의회””로, “전라북도 시·군의회”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의회(시·군 포함)”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6명”을 “3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군 의회”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시·군의회(시·군 포함)”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의회 및 시·군의회와 시·군의회”를 “의회와 도 및 시·군의회(시·군 포함) 또는 시·군의회(시·군 포함)”로 한다.

#### 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제6조제2항 후단 중 “시·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의회 의장”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도의회 의장”을 “의회”로 한다.

제10조 중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도의회와 시·군의회 및 시·군의회”를 “의회와 도 및 시·군의회(시·군 포함), 시·군의회(시·군 포함)”로 한다.

제11조 중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시·군의회 의장은”을 “협의회 참여 기관의 인사권자는”으로, “시·군의회 간 인사교류가”를 “인사교류가”로,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3조의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시·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를 “교류대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시·군의회 의장은”을 “기관의 인사권자는”으로 하고, “도의회 의장”은 “의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시·군의회 의장은 당해”을 “기관의 인사권자는 해당”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2022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75호

###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의회 주요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의 강화와 효과적인 언론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변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 전라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라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변인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조(직무) 대변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2. 의회의 대외 공식 입장 표명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①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의 임기 중 선임한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의 임기도 종료한다.

② 임기 종료일까지 새로운 대변인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대변인이 선임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5조(교체) 대변인이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실무지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은 주요 홍보활동 등에 있어 대변인의 실무를 지원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1호

##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같은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전라북도지사

###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산193번지 일원
- 면 적 : 7,898㎡

###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 지정목적 :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내 캠핑장, 사계절 정원 및 쉼터이어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시행기간 : 2018년 ~ 2022년

###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 정읍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정읍시가 직접 시행)

###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대기환경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적재함 덮개 설치, 차량 및 공사장비의 적정분산 투입, 주기적인 살수 실시, 토사의 이동(상·하적)시 작업장 내 풍속이 평균 8m/s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 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대책으로 우기를 피하여 건기에 공사를 실시하고 잔토 발생을 최소화하며, 현장인력에 대한 오수처리대책으로 인근 공공시설 화장실 이용

- 자연지형을 이용한 절·성토 및 토량 이동 최소화,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주변 경관과의 조화,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하며 토량의 반입 및 반출은 최소화하도록 계획
-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경적 사용 금지하며 작업시간을 가능한 주간(08:00 ~ 18:00) 작업으로 시행,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가. 인구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나. 교통처리계획

#### ○ 교통개선대책

- 국지도55호선에서 짚와이어의 출발점이 있는 부치봉 인근 다목적광장 주차장으로 진입
- 청정로에서 구절초 테마공원 내 주차장으로 진입
- 기존 구절초 테마공원 내 진입로인 국지도55호선 및 청정로를 통하여 진입 가능하므로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 불필요
- 다목적광장 주차장 이용 시 국지도55호선에서 기존 도로(B=4m)를 통하여 짚와이어 출발점인 부치봉 정상까지 연계 가능하며 출렁다리를 통하여 구절초 테마공원 내부와 연계 가능
- 구절초 테마공원 내 주차장 이용 시 구절초 테마공원 내부 연계 및 출렁다리를 통하여 짚와이어 출발점인 부치봉 정상까지 연계 가능

#### ○ 주차장계획

- 대형차량은 국지도55호선에서 진입 가능한 다목적광장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주차 유도
- 주차장 규모는 이용객 수요 추정 결과 현재의 주차장 활용 가능

### 다. 토지이용계획

- 지역개발계획 내용 반영하여 짚와이어 설치, 캠핑장 조성, 사계절 정원 조성으로 구분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합 계	7,898	100.0		
짚와이어 설치	소계	142	1.7	
	출발점	52	0.6	
	도착점	90	1.1	
	부대시설	(9,973)	-	지상부 2line
캠핑장 조성	소계	3,500	44.3	
	캠핑장	1,368	17.3	이동식 평테크
	관리동	24	0.3	
	화장실 샤워동	98	1.2	
	음수 및 취사장	15	0.2	
	도로	1,995	25.3	
사계절 정원 조성	소계	4,256	54	
	산책로	731	9.3	
	공원시설	225	2.9	
	태양광 공원등	-	-	
	초화류 및 조경식재	3,300	41.8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 사업비 : 2,153백만원(국비 1,458백만원, 지방비 695백만원)

구 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투자계획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사업비	2,153	1,458	695	1,458	695	300	100	200	595	958	-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 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보상계획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수용

나. 조성토지 공급계획

- 조성된 토지는 사업계획에 따라 정읍시에 귀속

11. 제27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세부목록

- [별첨 1] 세목조서 참조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생활여건 개선 가능성

- 체험·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 극대화
  - 지역적인 여건이 낙후도가 심한 산간의 외지로써 생활환경이 열악하지만 구절초 테마공원이라는 새로운 소득 자원의 활용으로 지역주민 여가공간 및 생활여건 개선
- 주민소득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방문객 증대를 위한 볼거리, 체험거리 확대, 지역농산물의 판매 등으로 지역의 경기 부양효과가 기대되며 주민 활력 지역사회 조성

나. 파급효과

- 경유형 관광객들을 지역 내 머무를 수 있는 체험형 관광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관광거점을 구축하여 지역관광사업 경쟁력 확보
- 사업조성 및 관광지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뿐만 아니라 자원은 지역주민과 지역 내 특산물의 최우선 고용·판매 등을 유도·조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정읍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지역 전체에 끌고루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부심 고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지역정책과(☎063-280-3616), 정읍시 도시재생과(☎063-539-579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서 열람(<http://www.eum.go.kr/>) 가능합니다.

## [별첨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시	면	리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합계						66,241	7,898			
1	정읍	산내	매죽	597	잡	1,051	68	정읍시		
2	정읍	산내	매죽	603	잡	112	5	정읍시		
3	정읍	산내	매죽	604-2	잡	1,510	864	정읍시		
4	정읍	산내	매죽	605-8	잡	1,041	217	정읍시		
5	정읍	산내	매죽	606	임	795	39	산림청		
6	정읍	산내	매죽	617	대	3,293	23	정읍시		
7	정읍	산내	매죽	산186	임	22,327	2,842	최명언 외3인	정읍시 수성동 961	
8	정읍	산내	매죽	산188	임	5,206	1,504	전라북도		
9	정읍	산내	매죽	산190-3	임	7,495	1,848	언양김씨도헌공파 구술당종중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486	
10	정읍	산내	매죽	산190-4	임	1,022	436	언양김씨도헌공파 구술당종중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486	
11	정읍	산내	매죽	산193	임	22,389	52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시 2022-272호

## 금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남원시 금지면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금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4일

### ■ 고 시 사 항

- ① 사업명 : 금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② 위치 : 남원시 금지면, 주생면, 대산면, 덕과면 일원
- ③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증대 등
- ④ 수혜면적 : 1,027ha
- ⑤ 사업개요 : 평야부 19조 7,191m  
- 용수로 : 16조 L=6,211m, 배수지선 3조 L=980m
- ⑥ 사업기간 : 2022. 09 ~ 2024. 12.(3개년)
- ⑦ 총사업비 : 4,000백만원
- ⑧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 ⑨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전화:063-620-2000)
- ⑩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3호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4일

###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 가. 명 칭 : 와룡 자연휴양림
- 나. 위 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84-52번지 일원
- 다. 지정면적 : 576,219㎡
- 라. 조성면적 : 45,823㎡(증 284㎡)

### 2. 자연휴양림 년도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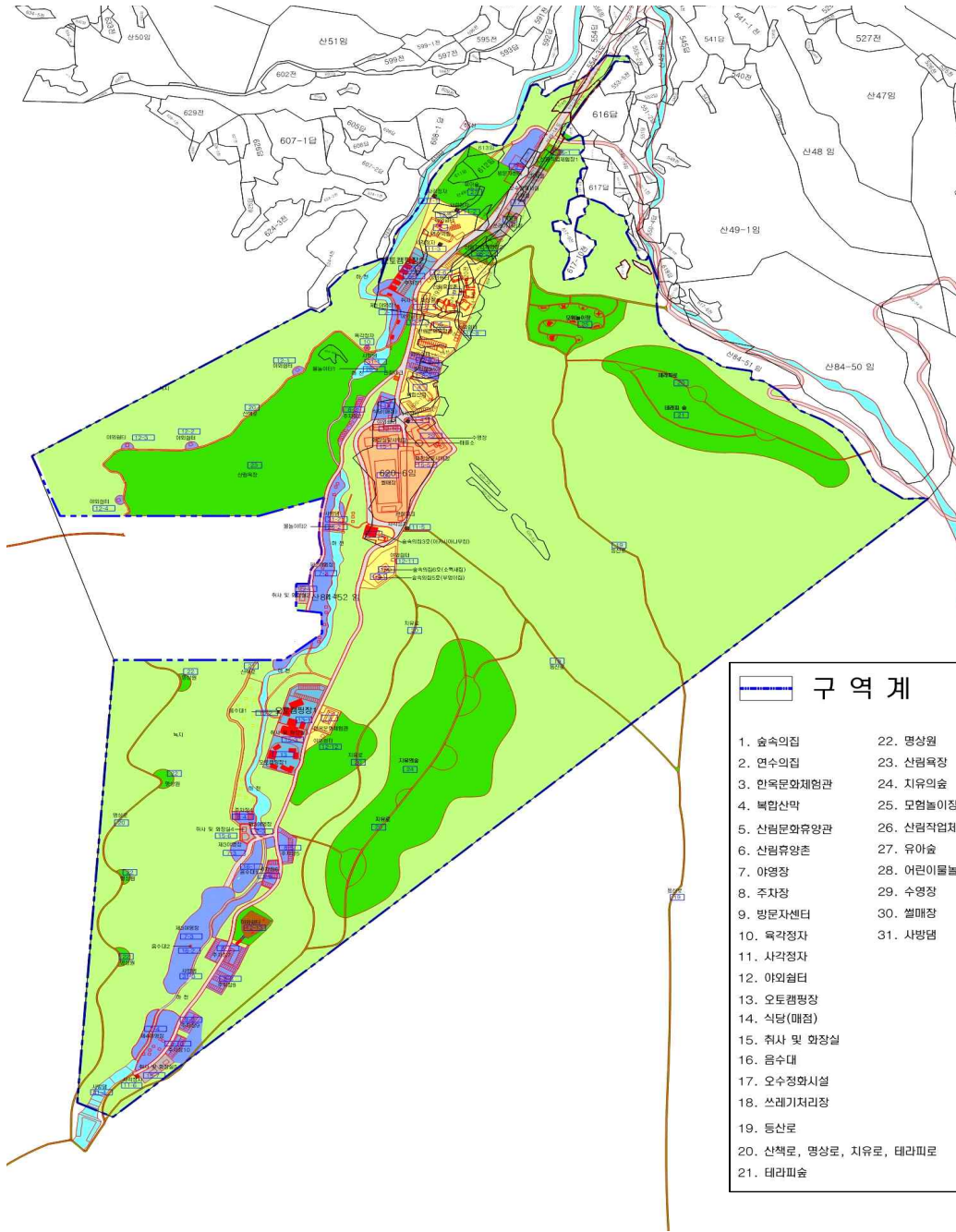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총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합계	9,200	1,200	6,000	1,000	1,000	
	국	600	600	-	-	-	
	도	4,000	-	3,000	500	500	
	군	4,600	600	3,000	500	500	

□ 시설계획

구분	위치	소유자	시설명	단위	규모	수량	형질변경 면적(㎡)			건축편입 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총계							45,539	45,823	증)284	3,301.01	3,427.54	증)126.53	
숙박시설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84-52 외 5필	장수군	숲속의집 3호 (아카시나무집)	동	186.53㎡	1	175	634.00	증)459	30	186.53	증)156.53	
			숲속의집 4호 (자카나무집)	동	30㎡	1	175	-	감)175	30	-	감)30.00	철거
			숲속의집 5호 (부엉이집)	동	32.4㎡	1	848	848		32.49	32.49		
			숲속의집 6호 (소쩍새집)	동	32.4㎡	1	848	848		32.49	32.49		
			연수의집	동	480.42㎡	1	3,461	3,461		480.42	480.42		
			한우문화체험관	동	132㎡	1	740	740		132	132		
			복합산막	동	352.3㎡	1	2,144	2,144		352.3	352.3		
			산림문화휴양관	동	243.3㎡	1	2,819	2,819		243.3	243.3		
산림휴양촌	동	462.6㎡	1	4,747	4,747		462.6	462.6					
			소계				15,957	15,957		1,808.53	1,808.53		
편의시설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84-52 외 4필	장수군	야영장	개소	621㎡	4	621	621					
			주차장	개소	5,033㎡	10	5,033	5,033					
			방문자센터	동	233.68㎡	1	732	732		233.68	233.68		
			육각정자	개소	시설물	1	37	37					
			사각정자	개소	시설물	6	150	150					
			아외워터	개소	이동식	13							
			오토캠핑장	개소	3,918㎡	2	3,918	3,918					
			식당(매점)	동	135.88㎡	1	886	886		135.83	135.83		
			소계				11,397	11,397		399.51	399.51		
위생시설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84-52 외 3필	장수군	취사장및화장실	개소	8,207.53㎡	7	1,909	1,909		400.44	400.44		
			음수대	개소	10㎡	2	10	10		10	10		
			오수정화시설	개소	162㎡	2	1,170	1,170		162	162		
			쓰레기처리장	개소	73.23㎡	1	1,110	1,110		73.23	73.23		
			소계				4,199	4,199		735.67	735.67		
체험교육시설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84-52 외 3필	장수군	등산로	Km		66							
			산책로										
			(명상로, 차유로, 테라피로)	Km		51							
			테라피숲	개소		1							
			명상원	개소		4	1,000	1,000					
			산림욕장	개소	31,706㎡	1							
			차유의숲	개소	34,635㎡	1							
			모험놀이장	개소	6,556㎡	1							
			서바이벌장	개소		1							
산림작업체험장	개소		2	1,330	1,330		161.3	161.3					
유아숲	개소	5,168㎡	1	2,867	2,867								
			소계				5,197	5,197		161.3	161.3		
체육시설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84-52 외 3필	장수군	어린이 물놀이터	개소		2							
			수영장	개소		1	3,294	3,294		99	99		
			썰매장	개소		1	5,495	5,495		97	97		
			소계				8,789	8,789		196	196		
기타시설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84-52 외 3필	장수군	논지	식	330,766㎡	1							
			하천	식	9,854㎡	1							
			도로	식	2.2km	1							
			사방댐	개소		4							
			소계										

□ 종합배치도



- 구역계**
- |                         |             |
|-------------------------|-------------|
| 1. 숙박의집                 | 22. 명상원     |
| 2. 연수의집                 | 23. 산림욕장    |
| 3. 인문학체험관               | 24. 자유의숲    |
| 4. 복합산막                 | 25. 모험놀이장   |
| 5. 산림문화휴양관              | 26. 산림직업체험장 |
| 6. 산림휴양촌                | 27. 유아숲     |
| 7. 야영장                  | 28. 어린이물놀이터 |
| 8. 주차장                  | 29. 수영장     |
| 9. 방문자센터                | 30. 쉼매장     |
| 10. 육각정자                | 31. 사방댐     |
| 11. 시각정자                |             |
| 12. 야외쉼터                |             |
| 13. 오토캠핑장               |             |
| 14. 식당(매점)              |             |
| 15. 취사 및 화장실            |             |
| 16. 음수대                 |             |
| 17. 오수정화시설              |             |
| 18. 쓰레기처리장              |             |
| 19. 등산로                 |             |
| 20. 산책로, 명상로, 자유로, 테라피로 |             |
| 21. 테라피숲                |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4호

### 익산 부송4지구 공공분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익산시 부송4지구 공공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4일

- 다 음 -

1. 사업명칭 : 익산 부송4지구 공공분양 주택건설
2.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전북개발공사 대표 김천환
  - 나.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3. 사업기간 : 2022. 12. ~ 2025. 6.
4. 사업개요
  - 가. 사업위치 : 익산시 부송동 도시개발사업지구 B블록
  - 나. 대지면적 : 41,577㎡
  - 다. 연 면 적 : 120,904.2649㎡
  - 라. 건립규모 : 745세대(전용 84A㎡ 501세대, 84B㎡ 151세대, 84C㎡ 93세대)
    - 아파트 8개동, 지상20층, 부대시설 28개동
  - 마. 건폐율/용적율 : 16.82% / 199.32%
  - 바. 주차대수 : 1,056대(옥내 1,054, 옥내 2)
  - 바. 사 업 비 : 249,000백만원
5.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고시
  - 기타 관계법률상 인·허가 등의 해당사항은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됨

전라북도 고시 제2022-275호

## 광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안)

광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4일

1. 사업명 : 광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일원
3. 사업목적 :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한 원활한 영농급수와 영농여건 개선
4. 수혜면적 : 185ha
5. 사업개요
  - 광곡저수지 개보수
    - 제체보강 및 이설도로
    - 여수로(L=35m, H=1.5m)
    - 방수로(B=6.2m, L=144m)
    - 취수시설(D=2.6m, L=111m)
    - 기초처리(42공)
    - 비상수문(2개소)
6. 총사업비 : 3,936백만원
7. 사업기간 : 2022. 11 ~ 2024. 12.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9.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063-270-0562)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산74-1	유	8,934	8,053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산76-3	임	10,548	254	이승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47, A동 205호(백석동, 현대밀라트1)				
3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21	유	10,984	10,85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280-1	도	142	138	국(건설 교통부)					
5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산82	도	102,897	221	국(건설 교통부)					
6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산80	임	2,882	34	김진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83, 104동 1601호(효자동3가 코오롱스카이라워 )				
7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산80-1	유	3,103	2,88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710-8	유	70	29	국(농림 수산부)					
9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23	유	556	556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27	유	2,747	1,28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산99	임	41,052	1,031	밀양박씨 행산공파 평석종중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942				
12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산99-1	유	14,173	10,81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산100	임	26,332	301	호남식품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3-1				
14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09-2	유	46	46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04-1	유	952	95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03	전	357	357	정화삼	없음				
17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05-1	유	301	30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1-4	유	151	15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1-10	도	205	12	완주군					
20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1-11	도	13	13	완주군					
21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77-2	도	458	105	완주군					
22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74	유	7,555	6,48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3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81	유	5,821	4,43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4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715	도	93	93	국(건설 부)					
25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산119-3	유	28,360	21,35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6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106	유	45,500	45,50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7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713-1	유	2,720	2,565	국(농림 수산부)					
28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92-1	유	35,461	34,69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403	대	536	273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718-1	유	752	164	국(농림 수산부)					
31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410	유	1,335	73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289-2	도	33	33	완주군					
33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289-1	유	1,176	68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4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285-1	유	1,544	1,54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286-4	도	106	106	이의영	22-2				
36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274	유	2,539	1,38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7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273	구	529	5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8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717-1	유	772	410	국(농림 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산74	임	43,435	166	이승택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47, A동 205호(백석동, 현대밀라트1)	이용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상70- 1우신아파트 9동110호		
								이용계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501대 림아파트 102동1205호		
								이용백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95-72 미림아파트 104호		
40	완주군구이면 광곡리	710-1	유	18,170	14,210	국(농림 수산부)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69호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전라북도지사

###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1. 개정 이유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이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268호)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관된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운영규칙 제명변경
  - 항공구조구급대(원) → 119항공대(원) 변경으로 운영규칙 제명 변경
- 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처리 규정 반영(안 제5조)
  - 119항공기사고조사단 구성
- 다. 자격심의 위원회 관련 사항 반영(안 제6조~제8조)
  -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 변경
  - 심의절차, 처리기준 등 구체화
- 라.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규정 준용 명시(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268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예산과 협의(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다. 협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법무행정과(규제심사), 예산과(재정부담),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2. 11. 4. ~ 2022. 11. 24.(20일간)
  - 2)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구조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구조구급과  
(전화 : 063-290-5651, FAX : 063-261-013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직접방문·도 홈페이지 등 이용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담당자 김현섭  
(전화 : 063-290-56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북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 ① 소방본부장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라북도 소방본부(이하“소방본부”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항공대장: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
- 2. 항공대원: 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담당자, 119구조대원·구급대원,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제3조(항공대의 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②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한다.

제4조(항공대의 업무) 항공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도지사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가. 구조구급과장

나. 항공대장

다.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각 1명(구조구급과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필요시):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도지사나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을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소방본부장

2.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방호예방과장, 구조구급과장, 감찰과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 정비사 1)

3. 간사: 항공대장

③ 자격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상·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항공업무에서 정지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

며, 심의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119항공대 업무분장(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업 무 분 장
운 항 실	<p>운항실장은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행계획 및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li> <li>2. 기상정보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li> <li>3. 조종 또는 비행업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li> <li>4. 항공안전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장애보고·비행평가·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li> <li>5. 탑재용 항공일지, 운항실적 등 운항관련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li> </ol>
정 비 실	<p>정비실장은 항공기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공기 및 항공장비의 정비(정비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li> <li>2.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감항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항공기 부품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항공기 연료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항공기 정비·탑승업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li> <li>6. 항공기 정비기록관리 등 정비관련 문서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li> </ol>
구조구급실	<p>구조구급실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li> <li>2. 구조·구급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유조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항공구조·구급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li> <li>5. 구조·구급·화재진압 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li> </ol>

비고 : 청사 유지관리, 일반물품 관리유지 등 상기 업무분장 외의 사항은 항공대장이 따로 분장한다.

### 관련법령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조(적용 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항공대를 보유한 시·도의 경우는 제3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 제4장 자격심의 위원회의 사항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금번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시행함에 있어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함.

**3. 작성자**

- 구조구급과 소방위 김현섭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19호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11. 4.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22-1-전라북도-20호
2. 단체명칭 : 남원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3.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395(천거동)
4. 대표자 : 이학모
5. 주된 사업
  - 김주열열사 추모사업
  - 김주열열사 홍보행사
  -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관리
  - 민주주의 교육(해설 및 출장강의) 사업 등
6. 최초등록일 : 2022. 10. 27.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25호

### 전북애향운동본부(비영리민간단체) 소재지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소재지 변경)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4일

1. 등록번호 : 제1982-1호
2.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윤 석 정(1938. 11. 20.)
4.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1층
5. 주된 사업
  - 지역사회발전과 애향도민화합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증진사업
  - 향토인재양성과 애향장학사업
  - 명예전북도민 사후관리
  - 출향도민(향우회) 후원사업 등
6. 최초등록연월일 : 1982. 5. 14.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35호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4일

공고사항

허가번호 (최초허가일)	법인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목적(사업)	변경허가일
제2015-11호 (2015.2.17.)	(사)녹원환경 감시연합중앙회	장석순	전북 익산시 약촌로 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감시와 보호 활동</li> <li>○ 자연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홍보활동</li> <li>○ 환경보호운동을 위한 행사활동</li> </ul>	2022. 10. 28.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42호

## 전라북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4일

구 분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부서명)
조례안 (8건)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세정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산업국 (에너지수소산업과)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산유통과)
동의안 (3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자치행정국 (회계과)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50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4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61호	신도익산센터 대표자 채명석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74, 1층(남중동)	2022.10.31.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52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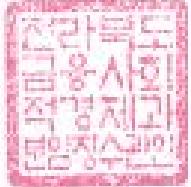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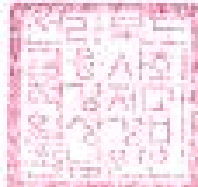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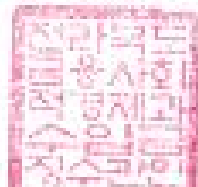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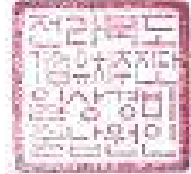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4일

공인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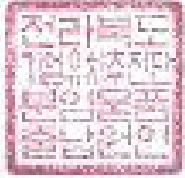





- 1. 공인 등록·폐기 사유 : 조직개편 사항 반영
-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2년 11월 4일
-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관광산업과	전라북도관광산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관광산업과수입금출납원인	
"	전라북도관광산업과분임정수관인	







등 록 공 인		
교통정책과	전라북도교통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교통정책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교통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금융사회적경제과	전라북도금융사회적경제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금융사회적경제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금융사회적경제과수입금출납원인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금융사회적경제과분임물품출납원인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전라북도기업애로해소지원단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기업애로해소지원단수입금출납원인	
"	전라북도기업애로해소지원단분임정수관인	
"	전라북도기업애로해소지원단일상경비출납원인	
기업유치추진단	전라북도기업유치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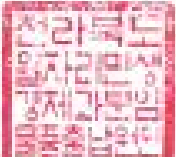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기업유치추진단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기업유치추진단분임징수관인	
농생명식품과	전라북도농생명식품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농생명식품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농생명식품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외협력과	전라북도대외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대외협력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대외협력과수입금출납원인	
도로공항철도과	전라북도도로공항철도과분임재무관인	
"	전라북도도로공항철도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도로공항철도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도로공항철도과일상경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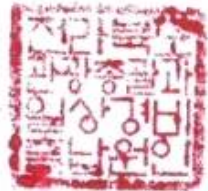



등 록 공 인		
문화산업과	전라북도문화산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문화산업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문화산업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문화산업과수입금출납원인	
물통합관리과	전라북도물통합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물통합관리과분임징수관인	

등 록 공 인		
소통기획과	전라북도소통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소통기획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소통기획과분임물품출납원인	
안전정책과	전라북도안전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안전정책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안전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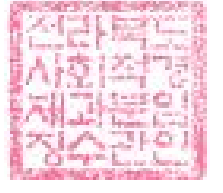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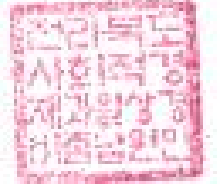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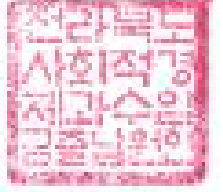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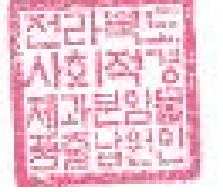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안전정책과수입금출납원인	
에너지수소산업과	전라북도에너지수소산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에너지수소산업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에너지수소산업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에너지수소산업과수입금출납원인	
여성가족과	전라북도여성가족과일상경비출납원인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여성가족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여성가족과수입금출납원인	
일자리민생경제과	전라북도일자리민생경제과일상경비출납원	
"	전라북도일자리민생경제과분임징수관	
"	전라북도일자리민생경제과수입금출납원	
"	전라북도일자리민생경제과분임물품출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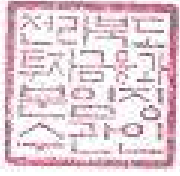





등 록 공 인		
정보화정책과	전라북도정보화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정보화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청년정책과	전라북도청년정책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청년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협력추진단	전라북도교육협력추진단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교육협력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교육협력추진단분임물품출납원인	
정책기획관	전라북도동부권특별회계출납원인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관광총괄과	전라북도관광총괄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관광총괄과수입금출납원인	
"	전라북도관광총괄과분임징수관인	
도로교통과	전라북도도로교통과일상경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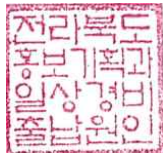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도로교통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도로교통과분임징수관인	
사회적경제과	전라북도사회적경제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사회적경제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사회적경제과수입금출납원인	
"	전라북도사회적경제과분임물품출납원인	







등 록 공 인		
기업지원과	전라북도기업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기업지원과수입금출납원인	
"	전라북도기업지원과분임정수관인	
"	전라북도기업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투자금융과	전라북도투자금융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투자금융과분임물품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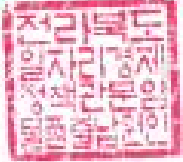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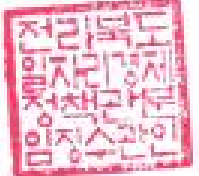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투자금융과분임징수관인	
농식품산업과	전라북도농식품산업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농식품산업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농식품산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정무기획과	전라북도정무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정무기획과분임징수관인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정무기획과수입금출납원인	
공항하천과	전라북도공항하천과분임재무관인	
"	전라북도공항하천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공항하천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공항하천과일상경비출납원인	
문화예술과	전라북도문화예술과일상경비출납원인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문화예술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문화예술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문화예술과수입금출납원인	
물환경관리과	전라북도물환경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전라북도물환경관리과분임징수관인	
홍보기획과	전라북도홍보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홍보기획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홍보기획과분임물품출납원인	
안전정책관	전라북도안전정책관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안전정책관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안전정책관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안전정책관수입금출납원인	

등 록 공 인		
신재생에너지과	전라북도신재생에너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신재생에너지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신재생에너지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신재생에너지과수입금출납원인	
여성청소년과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일상경비출납원인	
"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분임징수관인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수입금출납원인	
일자리경제정책관	전라북도일자리경제정책관분임물품출납원	
"	전라북도일자리경제정책관일상경비출납원	
"	전라북도일자리경제정책관수입금출납원	
"	전라북도일자리경제정책관분임징수관	
정보화총괄과	전라북도정보화총괄과일상경비출납원인	



등 록 공 인		
"	전라북도정보화총괄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도약청년과	전라북도대도약청년과분임징수관인	
"	전라북도대도약청년과일상경비출납원인	

##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10. 27.(목) 08:3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2 -26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방역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25일 부안 계화 조류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판명 및 9월 강원과 경기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확산이 우려되므로</li> <li>- 도내 가금·축산농가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역에 선제적 대응 및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동물방역과 / 협조 : )</p>
2022 -27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대응방안 강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11.1.)</p> <p style="text-align: center;">-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p> <p style="text-align: center;">※ 우리 도 복귀기업 : 17개사 / 전국 113개사 중</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 우리 도로 복귀하는 기업 및 복귀를 준비하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협의를 하고, 바뀐 법령 및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기업의 복귀 준비부터 성공적인 안착까지 우리 도의 지원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기업유치추진단 / 협조 : )</p>
2022 -28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 방안 및 도민 현장교육 추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하므로 우수 기업의 1인 경력관리 코칭기법 등을 참고하여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 1인 맞춤형 경력·교육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li> <li>○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강좌 외에, 도민 리더 그룹에게 1박 2일 정도의 도정 홍보·선진지 견학 등 현장교육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교육지원과, 인재양성과 / 협조 : )</p>
	당면·현안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보고 3점검 준수</b></li> <li>- 실·국장은 간부회의 및 각종 보고 사안에 대해 보고 후 사안의 경과 결과 등 이행상황을 필히 3회 이상 점검·확인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 / 협조 : )</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p>○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속조치 철저 당부</p> <p>- 10월 26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음. 그간 사업 준비와 선정을 위해 노력해준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도로공항공정국과 / 협조 :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b>《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2023년~2028년 / 총사업비 : 1조 554억원</li> <li>- 내용 : 내부간선도로 L=20.7km 신설 → 새만금 내부지역간 접근성 확보</li> <li>- 위치 : 관광레저용지 ~ 스마트 수변도시 ~ 동서도로</li> </ul> </div> <p>○ 국정감사 후속대책 마련 철저</p> <p>- 국정감사 후속대책 관련하여 우리 도 주요현안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한국투자공사 추가 이전’ 등의 정책반영을 위해 현안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성명 및 도의회 결의안 등 후속대책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관련 실·국 / 협조 :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한국투자공사 등 추가 이전(김성주, 금융위)</li> <li>- 여당의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슈화 반박(신영대, 산자위)</li> </ul> </div>
	<p>당면·현안업무</p>	<p>○ ‘23년도 국가예산 확보 국회단계 심의 총력 대응</p> <p>- 국회 상임위·예결위에 증액이 필요한 사안은 질의서를 작성하여 우리 도 국회의원, 연교의원, 국민의회 동행의원에게 전달하고, 국회 행정실에 제출이 되었는지, 발언이 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정책기획관 / 협조 : 관련 실·국)</p> <p>○ ‘23년도 예산편성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p> <p>(도 예산편성)</p> <p>- 내년도 본예산안이 11월 11일 도의회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므로 민선8기 첫 본예산이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실·국에서는 도의회 예산 심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 또한, 노인회·보훈단체·체육회 등 유관단체 관련 예산은 유관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소상히 설명하기 바람.</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p>(행정사무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9일부터 12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5분 발언', '도정질문' 등 의원 관심사항은 사전 해당의원에게 설명하여 쟁점을 해소하기 바람.</li> <li>- 또한, 도정 현안에 대해 소관 출연기관의 자료 등은 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같은 사안에 다른 의견·자료가 나오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확인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진 살·국 / 협조 : )</p>

군산시 고시 제2022-175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산254-1번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산25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 나. 명 칭 : 서수배수지 설치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7,118㎡
  - 나. 규 모 : 배수지 용량 V=250㎥ 등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 나. 성 명 : 군산시장(수도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5. 12. 3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No	읍면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서수면 관원리	산232-1	임야	7,136	1,483	박영애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신관원길 80-4	
2	서수면 관원리	산232-4	임야	8,786	728	이옥순 외 2인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로 41-20 (포일동)	
3	서수면 관원리	산250	임야	13,190	281	김용민 외 3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8길 12 503동 502호(진관동은평뉴타운제각말)	
4	서수면 관원리	산252	임야	4,264	511	평강채씨 덕연공파종중	380	
5	서수면 관원리	산253	임야	6,521	328	경주이씨 상서공파관원종중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2길 85, 106동 701호(팔봉동,기안아파트)	
6	서수면 관원리	산254-2	도로	198	121	군산시		
7	서수면 관원리	산254-5	임야	2,861	883	채광석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76번길 11(문현동)	
8	서수면 관원리	산254-7	임야	752	358	강봉구 외 2인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황등서로 613	
9	서수면 관원리	산254-8	임야	751	57	최춘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가길 104, 2층(방학동)	
10	서수면 관원리	산254-1	임야	9,917	2,368	이목산	이리시 창인동1가 108-8	
합 계				54,376	7,118			

군산시 고시 제2022-179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0-102호(2020.6.26.)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지곡동 39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2-1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9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중로2-16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중로2-16 : L=76.9m, B=15m(1단계), L=583.1m, B=15m(2단계)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전라북도 교육청) - 1단계
    - 2)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단계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전라북도 교육감 - 1단계, 군산시장(도시계획과)-2단계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2023. 9. 30.(1단계), ~ 2025. 12. 30.(2단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변경)
7. 도면 : 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변경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지곡동	418-10	전	582	82	군산시					
2	"	393	대	664	274	유한회사와*엠	군산시 소룡동 1565-6				
3	"	393-1	대	201	201	정*미	군산시 계산2길 92(지곡동)	군산** 협동조합	군산시 변영로 162(조촌동)	근저당, 지상권	
4	"	392-1	대	314	314	군산시					
5	"	390	전	383	114	최*현	군산시 서홍남동 418-22				
6	"	산139	임	1,587	674	서*희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1331 두산아파트 109동 203호				
7	"	391	전	873	844	이*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벌로163, 486동 2806호(경서동, 청사29블 록 호반베르디움)				지분 1/5
						이*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9길 31, 411동 1304호(중계동, 목화 아파트)				지분 1/5
						이*자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615번 길 34, 112동 803호(유천동, 현 대아파트)				지분 1/5
						이*홍	군산시 추동로 10, 104동 305호 (수송동, 동신아파트)				지분 1/5
이*춘	군산시 미장안길 55, 203동 1302 호(미장동, 파인빌2차아파트)				지분 1/5						
8	"	산137-1	임	2,380	186	김*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65, 5411동 2601호(이의동, 자연앤힐 스테이트아파트)	군산** 농업협동 조합	군산시 수송동 24-13(지곡지 점)	근저당, 지상권	
9	"	산140-13	임	661	593	박*철	군산시 미룡로 63, 102동 802호 (미룡동, 은파롯데인벤스가 아파)	주식회사 **은행	전북 전주시 덕 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지상권	
10	"	산140	임	198	198	배*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53, 103동 1102호(성주동, 프리빌리 지아파트)				
11	"	산135-6	임	232	232	박*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7 현대아파트 2-401				지분 50/232
						이*신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396-16 대옥아파트 다-402				지분 83/232
						박*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2-2 태평양사택-102				지분 33/232
						이*근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10, 5 동 101호 (복수동, 계룡아파트)				지분 66/232
12	"	산135-5	임	198	186	손*숙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98 셋 별연립주택 비-202				지분 33/198
						송*희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62-202				지분 66/198
						김*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3 반석마을8단지 아파트 802-1304				지분 66/198
						김*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542 송림마을 4단지 405-405				지분 33/198
13	"	산135-4	임	165	165	한*순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55-3 (소제동)				지분 66/165
						권*진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0-13				지분 50/165
						김*숙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396-16 대옥아파트 다-402				지분 49/165
14	"	산135-3	임	165	165	조*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492	군산 **조합	군산시 조촌동 841-13	근저당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5	"	산135-2	임	231	231	신*숙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26-309					
16	"	산140-9	임	264	36	김*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2-5 세종아파트 102동 1203호					
17	"	산140-7	임	165	165	강*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9-11				지분 1/2	
						신*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5-1802				지분 1/2	
18	"	산140-6	임	264	264	남*광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21, 204호(갈마동, 썬빌리지)	옥구** 협동조합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37	근저당, 지상권		
19	"	산140-8	임	231	21	유*선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93번길 46, 301호(선화동, 다가구주택)					지분 99/231
						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6길 190 (도마동)				지분 33/231	
						정*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394 샘물타운 308동 1306호				지분 33/231	
						박*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83번길 38, 108동 1901호(장대동, 월드킴패밀리타운)				지분 66/231	
20	"	산140-5	임	165	165	허*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82 한일유엔아이아파트 101동 1201호					
21	"	산140-4	임	198	198	서*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동 280-2 삼호아파트 2동 1505호					
22	"	산144-8	임	460	3	김*분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287번길50-15, 301호(낭월동)					지분 66/460
						이*옥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108동 601호(만년동, 조원아파트)				지분 33/460	
						최*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87, 104동 204호(관저동, 원앙마을)				지분 29/460	
						우*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162번길 23, 101동 505호(대흥동, 2차현대아파트)				지분 33/460	
						김*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문화로 13				지분 66/460	
						정*금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회관2길 56(신흥동)				지분 34/460	
						진*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48, 701동 204호(관저동, 구봉마을)				지분 40/460	
						정*덕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75, 상가동 201호(대사동, 대자연아파트)				지분 34/460	
						유*예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2길 4-26	옥천** 신용협동조합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65	근저당	지분 33/460	
라*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108동 601호(만년동, 조원아파트)				지분 92/460							
23		산144-1	임	198	61	유*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394, 3동 1302호(비래동, 현대아파트)	군산** 조합	군산시 조촌동 841-13	근저당, 지상권		
24		산142-2	임	1,587	407	채*량	군산시 경암동 660-7					
25		산135-1	임	331	331	강*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31 현대아파트 101-1503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6	산133	임	4,165	797	박*순	군산시 지곡동 522	육구** 협동조합	군산시 육구읍 육구로 37	근저당	지분 1/2	
					방*형	군산시 칠성7길 56, 101동 601호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지분 1/8	
					김*금	군산시 신창안길 49(산북동)				지분 1/8	
					이*옥	군산시 공항로 242(산북동)				지분 1/8	
					윤*은	군산시 용둔길 12, 108동 1505호 (미룡동, 금광베네스타)				지분 1/8	
27	산140-3	임	330	330	문*숙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4 맑은아 침아파트 109-1901				지분 33/330	
					정*기	충남 아산시 권곡동 607 주공아 파트 104-207				지분 66/330	
					이*순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708(조 촌동)				지분 33/330	
					김*래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729번길 46-11(용두동)				지분 66/330	
					박*길	대전광역시 중구 유철동 190-1 시영아파트 5동 306호				지분 33/330	
					박*희	충남 아산시 배방읍 복수로 116, 102동 601호(배방자이2차복수마 음)				지분 33/330	
					엄*영	경북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 203동 515호(옥동, 주공1아파트)				지분 33/330	
김*식	대전광역시 중구 목종로26번길 29, 102동 1102호(중촌동, 현대 아파트)	지분 33/330									
28	87-1	전	235	225	고*옥	서울 구로구 은수동 45-32 성원 빌라 6동 202호					
29	산131	임	298	298	박*국	군산시 구암동 159					
30	산130	임	3,273	1,577	진주강씨호**공파 도대공종중 강*수	군산시 육구읍 상평리 299					
31	산129-4	임	793	145	이*희	군산시 경암동 609-138					
32	산129-1	임	1,488	568	박*길	군산시 미원동 236					
33	산128	임	99	17	김*숙	구읍면 옥정리			사정		
34	산126	임	3,174	2,348	최*성	육구군 미면 산북리 423				지분 1/4	
					최*길	군산시 산북동 437				지분 1/4	
					최*윤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23-10				지분 1/4	
					최*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64번길 34, 202호(고강동, 동남 빌라)				지분 1/4	
35	산127	임	1,686	988	김*수	군산시 동지곡길 53, 102동 803 호(지곡동, 은파코아뷰아파트)					
36	산123	임	694	37	진주강씨호**공파 도대공종중 강*수	군산시 육구읍 상평리 299					
37	산124	임	496	373	문*수	군산시 사정동 249					
38	산125	임	2,398	127	김*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7푸른마 음 610동 1601호				지분 670/239 8	
					김*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5 오성은하아파트 1동 305호				지분 1058/23 98	
					오*용	서울 금천구 시흥동 907-4				지분 670/239 8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9		산122-3	임	3,123	1,252	김*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중촌1길 5, 202호(다산동, 송학아트빌라)	군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수송동 24-13	근저당, 지상권	
40		347-6	묘	165	30	국(기획재정부)					
41		347-5	전	383	383	국(기획재정부)					
42		347-7	전	1,626	152	국(기획재정부)					
43		347	전	1,405	86	한*웅	군산시 지곡동 70				
44		346	답	182	43	강*문	군산시 지곡동 143				
45		345	유	248	39	국(농수산부)					
46		347-3	전	360	19	최*단	군산시 월명로 501(월명동)	농협**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근저당	
47		347-1	전	73	73	국(기획재정부)					
48		347-2	제	33	33	국(농수산부)					
49		97-2	전	430	7	김*진	충남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530-23	육구**협동조합	군산시 육구읍 육구로 37	근저당, 지상권	
50		97-1	전	284	42	이*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22-7 버드네마을아파트 123동 1903호				
51		97-5	유	116	116	국(농수산부)					
52		97-4	제	145	145	국(농수산부)					
53		123-2	제	852	852	국(농수산부)					
54		339-4	답	199	75	유*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97번길 431, 268동 203호(주목동, 공대아파트)				지분 34/199
						이*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435 (비래동)				지분 66/199
						육*자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26번길 37, 에이동 301호(갈마동, 공신빌라)				지분 99/199
55		123-1	답	1,775	190	이*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 104동 1804호(안양동, 삼성 래미안아파트)	주식회사**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지상권	
						박*영 (가등기권자)	군산시 문화로 208-8, 104동 501호(미장동, 파인빌아파트)				
56		338-1	답	198	198	강*구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57		337-1	답	410	328	고*영	군산시 미장13길 33, 108동 2305호(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주식회사**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지분 1/4
						홍*화	군산시 미장13길 33, 108동 2305호(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지분 1/4
						고*호	군산시 미장13길 33, 108동 2305호(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지분 1/4
						고*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15-1, 510호(마곡동, 마곡해리움1차)				지분 1/4
58		336-1	답	340	287	고*영	군산시 미장13길 33, 108동 2305호(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주식회사**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지분 1/4
						홍*화	군산시 미장13길 33, 108동 2305호(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지분 1/4
						고*호	군산시 미장13길 33, 108동 2305호(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지분 1/4
						고*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15-1, 510호(마곡동, 마곡해리움1차)				지분 1/4
59		336-2	제	162	162	김*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4-15 뉴월드빌라 101호				
60		334-2	제	17	17	국(농수산부)					
61		340	유	560	391	국(농림수산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2		338-3	유	1,227	1,227	국(농수산부)					
63		337-3	유	347	347	국(농수산부)					
64		336-3	유	123	123	전라북도교육감					
65		334-3	전	45	45	전라북도교육감					
66		334	전	602	3	전라북도교육감					지분 552/602
						김*매	군산시 오룡동 832-44				지분 50/602
67		335	전	1,358	1,063	차*순	군산시 축동로 42, 302동 1001호 (수송동,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 라테1단지)				
68		산92-2	임	230	230	전라북도교육감					
계		68필지		48,844	21,898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지곡동	418-10	전	582	82	군산시					
2	"	393	대	664	219	유한회사와*업	군산시소룡동1565-6				
3	"	393-1	대	201	201	정*미	군산시계산2길92(지곡동)	군산** 협동조합	군산시변영로 162(조촌동)	근저당	
4	"	393-2	대	389	9	정*미	군산시계산2길92(지곡동)	군산** 협동조합	군산시변영로 162(조촌동)	근저당	
5	"	392-1	대	314	295	군산시					
6	"	390	전	383	114	최*현	군산시서흥남동418-22				
7	"	산139	임	1,587	406	우*자산신탁주 식회사	서울성동구금호동3가1331두산아 파트109동203호				
8	"	391	전	873	426	이*너	인천광역시서구청라커빌로 163,486동2806호(경서동,청사29 블록호반베르디움)				지분 1/5
						이*희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로19길 31,411동1304호(중계동,목화아파 트)				지분 1/5
						이*자	대전광역시중구계백로1615번길 34,112동803호(유전동,현대아파 트)				지분 1/5
						이*홍	군산시축동로10,104동305호(수 송동,동신아파트)				지분 1/5
					이*춘	군산시미장안길55,203동1302호 (미장동,파인빌2차아파트)				지분 1/5	
9	"	산140-13	임	661	349	우*자산신탁주 식회사	서울성동구금호동3가1331두산아 파트109동203호				
10	"	산140	임	198	177	배*희	경남 창원시성산구대암로253,103 동1102호(성주동,프리빌리지아 파트)				
11	"	산135-6	임	232	151	우*자산신탁주 식회사	서울성동구금호동3가1331두산아 파트109동203호				
12	"	산135-5	임	198	66	우*자산신탁주 식회사	서울성동구금호동3가1331두산아 파트109동203호				
13	"	산135-4	임	165	53	우*자산신탁주 식회사	서울성동구금호동3가1331두산아 파트109동204호				
14	"	산135-3	임	165	51	조*결	충북옥천군옥천읍대천리492	군산 **조합	군산시 조촌동 841-13	근저당	
15	"	산135-2	임	231	68	신*숙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844남산타 운아파트26-309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6	"	산140-9	임	264	36	김*미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462-5 세종아파트 102동1203호					
17	"	산140-7	임	165	165	강*철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799-11				지분 1/2	
						신*숙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858열매 마을4단지아파트405-1802				지분 1/2	
18	"	산140-6	임	264	264	남*광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141번길 21,204호(갈마동,천빌리지)	옥구** 협동조합	군산시 옥구 읍 옥구로37	근저당, 지상권		
19	"	산140-8	임	231	21	유*선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593번길 46,301호(신화동,다가구주택)					지분 99/231
						연*자	대전광역시서구도마6길190 (도마동)					지분 33/231
						정*순	대전광역시유성구원내동394샘물 타운308동1306호					지분 33/231
						박*경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783번길38,108동1901호(장대동,월드컵 패밀리타운)					지분 66/231
20	"	산140-5	임	165	165	허*원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382한일 유엔아파트101동1201호					
21	"	산140-4	임	198	198	서*자	대전광역시대덕구범동280-2삼 호아파트2동1505호					
22		산144-8	임	460	3	김*분	대전광역시동구산내로1287번길 50-15,301호(낭월동)					지분 66/460
						이*옥	대전광역시서구만년로45,108동 601호(만년동,초원아파트)					지분 33/460
						최*미	대전광역시서구관저북로87,104 동204호(관저동,원앙마을)					지분 29/460
						우*순	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162번길 23,101동505호(대흥동,2차현대아 파트)					지분 33/460
						김*경	충남연기군조치원읍문화로13					지분 66/460
						정*금	대전광역시동구마을회관2길 56(신흥동)					지분 34/460
						진*자	대전광역시서구관저로48, 701동204호(관저동,구봉마을)					지분 40/460
						정*덕	대전광역시중구보문산로M아파 트)					지분 34/460
						유*예	충북옥천군옥천읍관성로2길4-26	옥천** 신용협동 조합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65	근저당	지분 33/460	
라*만	대전광역시서구만년로45,108동 601호(만년동,초원아파트)					지분 92/460						
23		산144-1	임	198	61	유*희	대전광역시대덕구우암로394,3동 1302호(비래동,현대아파트)	군산** 조합	군산시 조촌 동 841-13	근저당, 지상권		
24		산142-2	임	1,587	407	채*량	군산시경암동660-7					
25		산135-1	임	331	119	우*자산신탁주 식회사	서울성동구금호동3가1331두산아 파트109동204호					
26		산133	임	4,165	168	우*자산신탁주 식회사	서울성동구금호동3가1331두산아 파트109동205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7	산140-3	임	330	330	문*숙	대전광역시서구내동4막은아침아파트109-1901					지분 33/330
					정*기	충남아산시권곡동607주공아파트104-207					지분 66/330
					이*순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708(조촌동)					지분 33/330
					김*례	대전광역시중구계룡로729번길46-11(용두동)					지분 66/330
					박*길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190-1시영아파트5동306호					지분 33/330
					박*희	충남아산시배방읍북수로116,102동601호(배방자이2차복수마을)					지분 33/330
					엄*영	경북안동시은행나무로106-3,203동515호(옥동,주공1아파트)					지분 33/330
					김*식	대전광역시중구목종로26번길29,102동1102호(중촌동,현대아파트)				지분 33/330	
28	87-1	전	235	103	고*옥	서울구로구온수동45-32성원빌라6동202호					
29	산131	임	298	298	박*국	군산시구암동159					
30	산130	임	2,009	895	우*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성동구금호동3가1331두산아파트109동203호				2022.05.17. 분할	
31	산130-2	임	441	441	우*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성동구금호동3가1331두산아파트109동204호				산130에서 분할	
32	산129-4	임	793	145	이*희	군산시경암동609-138					
33	산129-1	임	1,488	568	박*길	군산시미원동236					
34	산128	임	99	17	김*숙	구읍면 옥정리				사정	
35	산126	임	3,174	2,348	최*성	옥구군미면산북리423					지분 1/4
					최*길	군산시산북동437					지분 1/4
					최*윤	인천시남구주안동1423-10					지분 1/4
					최*섭	경기도부천시오정구고리울로64번길34,202호(고장동,동남빌라)					지분 1/4
36	산127	임	1,686	988	김*수	군산시동지곡길53,102동803호(지곡동,은파코아루아파트)					
37	산123	임	694	37	진주강씨호**공파도대공종중	군산시옥구읍상평리299					
					강*수						
38	산124	임	496	373	문*수	군산시사정동249					
39	산125	임	2,398	127	김*재	성남시분당구수내동77푸른마을610동1601호					지분 670/2398
					김*인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545오성은하아파트1동305호					지분 1058/2398
					오*용	서울금천구시흥동907-4					지분 670/2398
40	산122-3	임	3,123	1,252	김*옥	경기도남양주시도농로중촌1길5,202호(다산동,송학아트빌라)	군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동 24-13	수송	근저당, 지상권	
41	347-6	묘	165	30	국(기획재정부)						
42	347-5	전	383	383	국(기획재정부)						
43	347-7	전	1,626	152	국(기획재정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4		347	전	1,405	86	한*웅	군산시지곡동70				
45		346	답	182	43	강*문	군산시지곡동143				
46		345	유	248	39	국(농수산부)					
47		347-3	전	360	19	최*단	군산시월명로501(월명동)	농협**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 구동일로120(충 정로1가)	근저당	
48		347-1	전	73	73	국(기획재정부)					
49		347-2	제	33	33	국(농수산부)					
50		97-2	전	430	7	김*진	충남논산시은진면탑정로530-23	옥구** 협동조합	군산시옥구읍 옥구로37	근저당, 지상권	
51		97-1	전	284	42	이*환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422-7버 드내마을아파트123동1903호				
52		97-5	유	116	116	국(농수산부)					
53		97-4	제	145	145	국(농수산부)					
54		123-2	제	644	644	국(농수산부)					
55		339-4	답	199	75	유*동	대전광역시유성구자운로97번길 431,268동203호(주목동,공대아파 트)				지분 34/199
						이*식	대전광역시대덕구우암로435(비 래동)			지분 66/199	
						육*자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326번길 37,에이동301호(갈마동,공신빌 라)			지분 99/199	
56		123-1	답	1,775	190	이*경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천서로 311,104동1804호(안양동,삼성 래미안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금암동 669-2	근저당, 지상권	
						박*영 (가등기권자)	군산시문화로208-8,104동501호 (미장동,과일빌아파트)				
57		338-1	답	99	88	강*구	군산시옥산면남내로105				
58		337-1	답	410	328	고*영	군산시미장13길33,108동2305호 (미장동,제일풍경채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전북전주시덕 진구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지분 1/4
						홍*화	군산시미장13길33,108동2305호 (미장동,제일풍경채아파트)				지분 1/4
						고*호	군산시미장13길33,108동2305호 (미장동,제일풍경채아파트)				지분 1/4
						고*민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서1로 115-1,510호(마곡동,마곡헤리움1 차)				지분 1/4
59		336-1	답	340	287	고*영	군산시미장13길33,108동2305호 (미장동,제일풍경채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전북전주시덕 진구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지분 1/4
						홍*화	군산시미장13길33,108동2305호 (미장동,제일풍경채아파트)				지분 1/4
						고*호	군산시미장13길33,108동2305호 (미장동,제일풍경채아파트)				지분 1/4
						고*민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서1로 115-1,510호(마곡동,마곡헤리움1 차)				지분 1/4
60		336-6	제	160	160	김*향	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 124-15뉴월드빌라101호				
61		334-2	제	17	17	국(농수산부)					
62		340	유	560	126	국(농림수산부)					
63		338-3	유	1,227	1,227	국(농수산부)					
64		337-3	유	347	347	국(농수산부)					
65		336-3	유	123	123	전라북도교육감					
66		334-3	전	45	45	전라북도교육감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의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7		334	전	602	3	전라북도교육감					지분 552/602
						김*배	군산시오룡동832-44				지분 50/602
68		335-3	전	431	431	차*순	군산시옥동로42,302동1001호(수송동,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드1단지)				
69		산92-2	임	230	230	전라북도교육감					
70		392	대	7	1	군산시					
71		산140-25	임	661	412	오*명	군산시 남수송3길22	농협**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 구통일로120(충 정로1가)	근저당, 지상권	
72		산140-30	임	317	261	장*순	군산시 미장13길 33.104동1504호	군산**신용 협동조합	군산시 하나 운로71	근저당, 지상권	
73		산140-19	임	330	330	장*순	군산시 미장13길 33.104동1504호	군산**신용 협동조합	군산시 하나 운로71	근저당, 지상권	
74		산140-20	임	736	9	왕*철	군산시 계산2길 78	군산**신용 협동조합	군산시 중앙 로 101-1	근저당, 지상권	
						신*자	군산시 백토로 216 105동1004호				
75		산140-32	임	331	237	신*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립로99번 길26-16,	군산**조합	군산시 조촌로 101	근저당, 지상권	
						이*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78번길 9, 105동2203호				
						박*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3번길 13, 107동407호				
						강*용	경북 포항시 북구 대안길56. 110동 1308호				
76		산140-31	임	198	143	김*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67				
77		338-5	답	99	99	강*구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78		123-3	계	208	208	전라북도교육감					
79		336-5	답	14	14	전라북도교육감					
80		산92-3	임	701	104	전라북도교육감					
81		335-2	전	238	189	전라북도교육감					
82		334-4	전	1,247	214	전라북도교육감					
83		336-4	유	1,087	230	전라북도교육감					
84		337-4	유	932	370	전라북도교육감					
85		340-1	유	1,807	169	전라북도교육감					
86		338-4	유	432	432	전라북도교육감					
계		86필지		54,139	21,107						



군산시 고시 제2022-182호

##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대로2-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군산시 경암동 57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대로2-4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련 도서 사본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4일

###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변경)

####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4	30~33	보조간선 도 로	7,790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호광장	건고228 (’86.5.23)	
변경	대로	2	4	30~33	보조간선 도 로	7,790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호광장	건고228 (’86.5.23)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4	대로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구간 폭원 변경 - B=30m~33m(증 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에 따라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 구간 폭원 변경</li> </ul>

## 나. 실시계획인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경암동 577-4번지 외 3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사업
  - 나) 명 칭 : 경암동 로컬푸드복합센터앞 가감속차로 설치사업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대로 2-4 : L=135m, B=5m, A=838㎡(가감속차로 설치)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먹거리정책과)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 6) 도 면 : 게재 생략
-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경암동	577-3	대	297	4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57	대	93	20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경암동	577-1	대	3,653	25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4	도	3,825	52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합 계	4필지		7,868	838						

군산시 고시 제2022-183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쌍용에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군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4일

군 산 시 장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	쌍용에가아파트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지곡동 31-7번지 일원	군산시 지곡동 607번지 일원	52,009	증) 36.9	52,045.9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	1	52,009	증) 36.9	52,045.9	①	40,629.0	증) 116.8	40,745.8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②	5,138.0	-	5,138.0	대로2-11
					③	2,423.0	-	2,423.0	소로2-577
					④	1,210.0	-	1,210.0	소로2-582, 소로2-685
					⑤	2,223.0	감) 17.0	2,206.0	중로1-17
					⑥	386.0	감) 62.9	323.1	주출입구 가감속차로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공고 제2022 - 2247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1-19호외 2)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8-122호(2018.9.21.)호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79-4번지 일원 도시계획 시설(도로:중로1-91호외 2)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4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79-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1호외 2)사업

2) 명 칭 : 수페리체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 중로 1-91호선 도로개설 폭원: 20m, 연장: 175m, 면적: 4,724㎡

2) 소로 1-379호선 도로개설 폭원: 10~13m, 연장: 140m, 면적: 1,921㎡

3) 대로 3-28호선 기존도로 정비 연장: 260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빌딩 11층

2) 사업시행자 성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2018.09.21.~2022.06.30. 변경 2018.09.21.~2025.06.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변경) 붙임참고

4.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토지 및 공공시설물
5.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중로1-91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개정면 통사리	179-4	도	66	44	양두용	전라북도 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1 엘지아파트102동 405호					
2		179-6	도	86	8	양두용	전라북도 진주시 완산구 여울로 109, 102동 405호(서신동, 엘지아파트)					
3		181	도	77	4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개정단위농 업협동조합	옥구군 개정면 발산리 113-3	근저당		
4		203-12	도	70	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5		211-1	답	5,355	23	이정희	군산시 개정면 통사장산길 26-4					
						이화송	군산시 경암동 540-8 경암동부향하나로아파트 101동 1212호					
						이향경	군산시 나운동 153-11 비사별아파트 101동 1102호					
						이정	순천시 조례동 1626-14					
6		211-7	답	398	29	이광호	옥구군 개정면 통사리 32					
						이화송	군산시 경암동 540-8 경암동부향하나로아파트 101동 1212호					
7		212-2	답	438	438	진선광	인천광역시 남구 송학길 104번길 30, 103동 404호(주안동, 인천주안한신휴플러스)	조미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6,307동 1407호(마두동,백마마을)	근저당	당초	
						진선광	인천광역시 남구 송학길 104번길 30, 103동 404호(주안동, 인천주안한신휴플러스)	조미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6,307동 1407호(마두동,백마마을)	근저당	변경 가압류	
								메리츠캐피탈(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23층(여의도동)			
						농협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8	212-4	답	167	160	양우용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80-2						
9	213-1	답	208	208	진경건설	군산시 법원로 17, 2층(조촌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신탁		
10	213-2	답	3,375	160	이나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202동 1603호(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이현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25, 110동 2002호(상현동, 만현마을1단지롯데캐슬아파트)						
11	213-4	도	46	4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12	213-5	답	3	3	김광명	옥구군 개정면 통사리 98						
13	213-7	도	165	16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4		213-8	답	195	195	이나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202동 1603호(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이현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25, 110동 2002호(상현동, 만현마을1단지롯데캐슬아파트)				
15		214	답	1,560	1,560	기호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우금로 126, 211동 404호(동춘동, 현대2차아파트)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동춘동지점)	근저당	
16		214-3	답	7	7	진경건설	군산시 법원로 17, 2층(조춘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신탁	
17		214-4	도	56	7	국	농림수산부				
18		214-5	도	26	26	국	농림수산부				
19		214-7	답	65	21	국	건설교통부				
20		214-8	도	1,066	97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1		214-9	답	86	27	국	건설교통부				
22		216-7	도	2	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3		216-10	도	90	9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4		216-11	답	570	19	기호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우금로 126, 211동 404호(동춘동, 현대2차아파트)				
25		216-14	답	308	180	기호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우금로 126, 211동 404호(동춘동, 현대2차아파트)				
26		564	도	2,168	292	국	건설부				
계		26필지		16,653	4,724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소로1-379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개정면 통사리	212-5	답	895	895	기호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우금로 126, 211동 404호(동춘동, 현대2차아파트)				
2		212-8	답	347	347	진경건설	군산시 법원로 17, 2층(조춘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신탁	
3		216-11	답	570	551	기호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우금로 126, 211동 404호(동춘동, 현대2차아파트)				
4		216-14	답	308	128	기호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우금로 126, 211동 404호(동춘동, 현대2차아파트)				
계		4필지		2,120	1,921						

익산시 고시 제2022-178호

##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늘푸른공원과(☎063-859-58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 11. 4.

### 1.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 결정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고시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인화공원	근린공원	인화동 2가 174-1 일원	137,816	-	137,816	전라북도 고시 제 2017-165호 (2017.08.18.)	

### 2. 인화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 조서 : “변경”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37,816		137,816	165	-	195	165	-	195	36.7% (100%)	
공원시설	시설면적 합계	52,139	감)1,588	50,551	165	-	195	165	-	195	(36.7%)
	도로및광장	37,675	감)848	36,827	-	-	-	-	-	-	
	조경시설	3,610	감)162	3,448	-	-	-	-	-	-	
	휴양시설	3,281	감)542	2,739	-	-	-	-	-	-	
	유희시설	336	-	336	-	-	-	-	-	-	
	운동시설	3,547	증)9	3,556	-	-	-	-	-	-	
	교양시설	832	-	832	-	-	-	-	-	-	
	편익시설	2,858	감)45	2,813	165	-	195	165	-	195	
공원관리시설	-	-	-	-	-	-	-	-	-		
녹지 (기타시설)	85,677	증)1,588	87,265	-	-	-	-	-	-	(63.3%)	



##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 조서 : “변경”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37,816		137,816	165	195	165	195	
시설면적합계				52,139	감)1,588	50,551	165	195	165	195	
도로및광장	소 계			37,675	감)848	36,827					
	1-1	만남의광장	인화동 174번지 일원	1,973	-	1,973					기차조형물
	1-2	동익산역광장	인화동 174번지 일원	639	감)413	226					
	1-3	통일광장	인화동 174-1번지 일원	622	-	622					
	1-4	교차광장	인화동 174-2번지 일원	70	-	70					
	1-5	간널목광장	인화동 174-1번지 일원	271	-	271					
	1-6	나눔의광장	인화동 174-1번지 일원	458	-	458					
	1-7	무궁화광장	인화동 590-16번지 일원	699	-	699					
	1-8	비둘기광장	동산동 588-17번지 일원	350	감)8	342					
	1-9	여행의광장	동산동 588-17번지 일원	785	감)427	358					
		도로	-	31,808	-	31,808					기차신호등
조경시설	소 계			3,610	감)162	3,448					
	2-1	나눔숲	인화동 174-1번지 일원	3,448	-	3,448					
	2-2	생태수로	인화동 590-16번지 일원	162	감)162						
휴양시설	소 계			3,281	감)542	2,739					
	3-1	달빛정원	인화동 174-2번지 일원	1,751	감)490	1,261					
	3-2	건강나눔숲	동산동 588-17번지 일원	1,088	-	1,088					
	3-3	휴게쉼터1	인화동 174-1번지 일원	280	감)52	228					
	3-4	휴게쉼터2	동산동 459-10번지 일원	55	-	55					
	3-5	휴게쉼터3	동산동 475-1번지 일원	55	-	55					
	3-6	휴게쉼터4	춘포리 519-2번지 일원	52	-	52					
유희시설	소 계			336	-	336					
	4-1	어린이놀이터		336	-	336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동시설	소 계			3,547	증)9	3,556					
	5-1	다목적운동장	인화동 174-2번지 일원	3,307	-	3,307					
	5-2	체력단련장1	인화동 174번지 일원	94	감)46	48					
	5-3	체력단련장2	인화동 174번지 일원	146	감)71	75					
	5-4	체력단련장3	인화동 174번지 일원		증)126	126					
교양시설	소 계			832	-	832					
	6-1	야외공연장	인화동 174-1번지 일원	832	-	832					
편익시설	소 계			2,858	감)45	2,813	165	195	165	195	
	7-1	주차장1	인화동 174-1번지 일원	1,376	감)70	1,306					
	7-2	주차장2	인화동 590-16번지 일원	1,215	감)5	1,210					
	7-3	화장실1	인화동 174-2번지 일원	53	-	53	27	27	27	27	
	7-4	화장실2	인화동 174-1번지 일원	53	-	53	27	27	27	27	
	7-5	화장실3	동산동 588-17번지 일원	53	-	53	27	27	27	27	
	7-9	화장실4	금강동 745-1번지 일원		증)30	30		30		30	
	7-6	휴게소1	동산동 459-10번지 일원	36	-	36	28	28	28	28	
	7-7	휴게소2	동산동 475-1번지 일원	36	-	36	28	28	28	28	
	7-8	휴게소3	춘포리 519-2번지 일원	36	-	36	28	28	28	28	
녹지 및 기타				85,677	증)1,588	87,265					기차 3칸

다. 도로 결정(변경) 총괄 조서

유별	변경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변경	22	5,378	31,808	-	-	-	3	336	3,116	19	5042	28,692	
중로	변경	1	92	1202	-	-	-	-	-	-	1	92	1,202	
소로	변경	21	5,286	30,606	-	-	-	3	336	3,116	18	4,950	27,490	

## 라. 도로 결정(변경) 세부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 (㎡)	시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합계					5,378	31,808			
당초	중로	3	1	13	진입 도로	92	1,202	서측구역계	통일광장	일반도로
당초	소로	2	1	10~11	연결 도로	189	1,882	통일광장	소로2-2	일반도로
당초	소로	2	2	10	연결 도로	37	377	소로2-3	주차장2	일반도로
당초	소로	2	3	15	진입 도로	110	857 (1,640)	북측구역계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당초	소로	3	1	3	진입 도로	102	304	역전광장	동익산역광장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2	6	진입 도로	29	176	북측구역계	소로(보)3-3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3	2	연결 도로	77	153	소로(보)3-2	휴게쉼터1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4	6	연결 도로	20	119	동익산역광장	휴게쉼터1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5	8	연결 도로	3	27	중로3-1	주차장1	일반도로
당초	소로	3	6	3	진입 도로	10	29	북측구역계	통일광장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7	3	연결 도로	11	33	통일광장	교차광장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8	3	연결 도로	6	19	교차광장	다목적운동장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9	3	연결 도로	8	24	야외공연장	소로2-1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11	3	연결 도로	153	445	무궁화광장	건강나눔숲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12	3	연결 도로	103	301	무궁화광장	비둘기광장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13	3	연결 도로	16	38	소로(보)3-14	소로3-11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14	3	진입 도로	148	444	주차장2	북측구역계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15	6	연결 도로	2,581	15,491	여행의광장	소로(보)3-16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16	6	진입 도로	22	135	북측구역계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당초	소로	3	17	6	진입 도로	1,595	9,569	소로(보)3-16	남측구역계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18	2.5~5	연결 도로	61	167	소로2-3	나눔숲	보행자도로
당초	소로	3	19	3	연결 도로	5	16	야외공연장	나눔의광장	보행자도로

3. 결정사유 : 공원 내 공공시설 설치 및 기 조성된 공원녹지 현황 반영

4. 관계도서 : “계재 생략”. 끝.

남원시 고시 제2022-147호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1.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인 『남원 옛 명지각 문화시설 조성사업 (한옥체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따라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1월 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옛 명지각 문화시설 조성사업(한옥체험)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금동 45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1,38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관광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동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명세	
합 계					1,383	1,383	-		-	-	-	
1	남원시 금동		45	대	1,131	1,13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외 2인	-	-	-	
2	"		52	대	202	202	"	남원시 외 2인	-	-	-	
3	"		44-2	대	50	50	"	남원시 외 2인	-	-	-	

<편입 지장물 조서>

연번	건물소재지		지목	건 축 물						비고	
	시·동	지번		건축물구조	건축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합 계					581.2	-		-	-	-	
1	남원시 금동	45외	대	목조	261.3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외 2인				
2	"	"	대	목조	293.9	"	남원시 외 2인				
3	"	"	대	목조	26	"	남원시 외 2인				

김제시 공고 제2022-776호

##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김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11월 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 하동 40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나. 명 칭 :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및 규모
  - 가. 사업부지 면적 : 9,231㎡
  - 나. 사업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건물명	층수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소 계		622.5	854.66	622.5	1,186.50	-	(증)331.84	
노인종합 복지관	1층	622.5	269.66	622.5	564.00	-	(증)294.34	
	2층		585.00		622.50		(증)37.50	
	옥탑1층		20.48		20.48		-	(바닥면적제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김제시장(여성가족과)
  - 나.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5. 사업시행기간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7. 관계도서(도면) : 게재생략
8. 열람사항
- 가.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 김제시청 도시과 (063-540-3346)
- 다.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내용
- 라. 의견서 제출 : 관계서류 열람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붙임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하동	404-1	대	7,344	7,344	김제시	김제시 중앙로 40				
2	하동	404-10	구거	149	149	김제시	김제시 중앙로 40				
3	하동	404-11	대	1,738	1,738	김제시	김제시 중앙로 40				

수용되거나 사용할 건축물조서

건물 (동별)	건물명	층수	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의 권리명세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1동	노인종합복지관	1	622.50	854.66	김제시	김제시 중앙로 40				
주2동	실내케이트볼장	1	985.18	967.01	김제시	김제시 중앙로 40				
주3동	공동작업장 (2층 경로당)	2	233.18	377.72	김제시	김제시 중앙로 40				

완주군 고시 제2022-88호

##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11월 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83-5 외 1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 명 칭 : 이서휴게소 상행선(천안방향) 휴게소(캐노피)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교통광장 : A=426,594㎡
  - (대지면적 : 천안방향 휴게소: 27,508㎡, 순천방향 휴게소: 30,453㎡)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03.51	증)16.35	2,619.86	3,279.42	증)32.16	3,311.58	
주1~4,부1~9	2,388.26	-	2,388.26	3,079.98	-	3,079.98	
주5	215.25	증)16.35	231.60	199.44	증)32.16	231.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2022. 7. 21.
  - 준공예정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임실군 고시 제2022-89호

## 임실 군계획시설(임실 중로3-10)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

임실군 군계획시설(임실 중로3-10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임 실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05-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임실천 아도교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내용: 교량신설 1식(연장 45.0m, 폭 12.9m)
  - 사업면적: 57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임실군수,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3. 12. 31.
6. 사업시행지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계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서: [붙임1]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이동전	이동후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계		3필지			14,676	578						
1	임실면 이도리	934-46		천	3,041	70	국	국(건설부)				
2	임실면 이도리	934-114		천	11,028	413	국	국(건설부)				
3	임실면 이도리	217-1		천	607	95	국	국(건설부)				